

윤리분과위원회 운영규정

2014년 1월 17일 승인

제1조(목적)

축구계의 불법행위 및 비윤리적행위(이하 '비윤리 행위'라 한다)를 예방, 근절함으로써 깨끗하고 건전한 축구 문화 조성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윤리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윤리의식 강화와 비윤리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비윤리 행위를 유발하는 제도와 관행의 개선
3. 경기 외적인 비윤리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징계심의 요청
4. 기타 윤리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 및 위원은 대한축구협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조사, 연구 등을 위해 필요시 위원 중의 일부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임기)

- ① 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회장이 임기 종료 등으로 대표권을 상실할 경우, 회장이 위촉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종료된다.

제5조(회의 개최 등)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소집하거나, 위원 과반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논의하는 사안에 관한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6조(사무처의 협조 및 담당 부서)

- ①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회 사무처는 관련 사안에 대한 경위 조사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 ②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협회 사무처 내에 담당 부서를 둔다. 단, 담당 부서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협회 전무이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를 보조하게 한다.
- ③ 담당 부서 또는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지정된 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징계위원회와의 관계)

경기와 관련된 불법 행위는 협회 징계위원회가 심의하여 처리하고, 경기와 관련되지 않은 비윤리 행위는 윤리위원회가 조사하여 징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 경비)

- 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회 예산으로 편성한다.
- ② 회의에 출석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위원장 및 위원에게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당연직으로 수행하는 협회 임원은 그러하지 않는다.

제9조(회의 결과 보고)

위원회는 회의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규정의 제·개정)

- ① 본 규정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제·개정한다.
- ②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은 사회통념에 부합해야 한다.

부 칙(2014. 1)

제1조(효력발생 시기)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경과 조항)

정관 또는 본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의 임기는 정관에 따라 계산하고, 최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4조 2항에 상관없이 2014. 12. 31. 종료된다.